



통보

본 통보문은 10.6 조항에 따라 회람한다.

1.	통보국가: <u>중국</u> 해당되는 경우, 관련 지방정부의 명칭(제 3.2 조 및 제 7.2 조):
2.	담당기관: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(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)
3.	근거 조항 제 2.9.2 조 [X], 제 2.10.1 조 [], 제 5.6.2 조 [], 제 5.7.1 조 [], 제 3.2 조 [], 제 7.2 조 [], 기타:
4.	해당 제품(HS 코드 또는 국가 관세 분류 번호. 해당되는 경우 ICS 번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): 가정용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전지 및 배터리 (HS 코드: 850650; 850760); (ICS 코드: 29.220.99)
5.	통보 문서의 세부 사항(제목, 페이지 수, 접근 방법):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, 전자·전기 장비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전지 및 배터리의 안전성 — 제 5 부: 가정용 전기기기 (34 페이지, 중국어) 요청 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당국의 통보 문서 및/또는 연락처 링크: 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6/TBT/CHN/26_01468_00_x.pdf
6.	내용: 본 문서는 가정용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한다. 본 문서는 가정용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전지 및 배터리에 적용된다.
7.	목적 및 근거(해당되는 경우 긴급한 문제의 성격 포함): 기만적 관행방지 및 소비자보호;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보호
8.	관련 문서: -
9.	채택 예정일: 추후 결정 시행 예정일: 승인 후 12 개월

10. 의견 제공

의견 마감일: 2026-05-15

통보일로부터 60 일 [X]

해당 통보와 관련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:

중화인민공화국 WTO/TBT 국가통보질의센터

전화: +86 10 57954633/ 57954627

이메일: tbt@customs.gov.cn